

# 2015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예산기준)

2015. 2. 27.

부산광역시장(인)

- ◆ 우리 부산광역시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0조 20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9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7조9,037억원)보다 2조1,16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조 1,27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3조 6,362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2조 2,563억원입니다.
- ◆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6.8%(동종평균 61.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8%(동종평균 69.6%)입니다.
- ◆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32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는 동종단체에 비해 의존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국비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과제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면서, 우리시의 현안 사항인 일자리창출, 안전분야, 도시재생, R&D지원을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 세원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을 통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지방채 또한 통합부채관리·지방채발행상한제 등의 채무 감축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유병길  
연락처 : 051) 888-2085

#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100,204	93,232	6,972	79,037	74,964	4,073
	세출예산	100,204	93,232	6,972	79,037	74,964	4,07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46.8	47.5	△0.7	61.2	61.5	△0.3
	재정자주도	60.8	63.0	△2.2	69.6	70.8	△1.2
	통합재정수지	932	264	668	-458	-216	△242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2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020,444	6,880,522	753,157	1,557,194	829,571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250,361	8,767,693	9,143,594	9,323,188	10,020,444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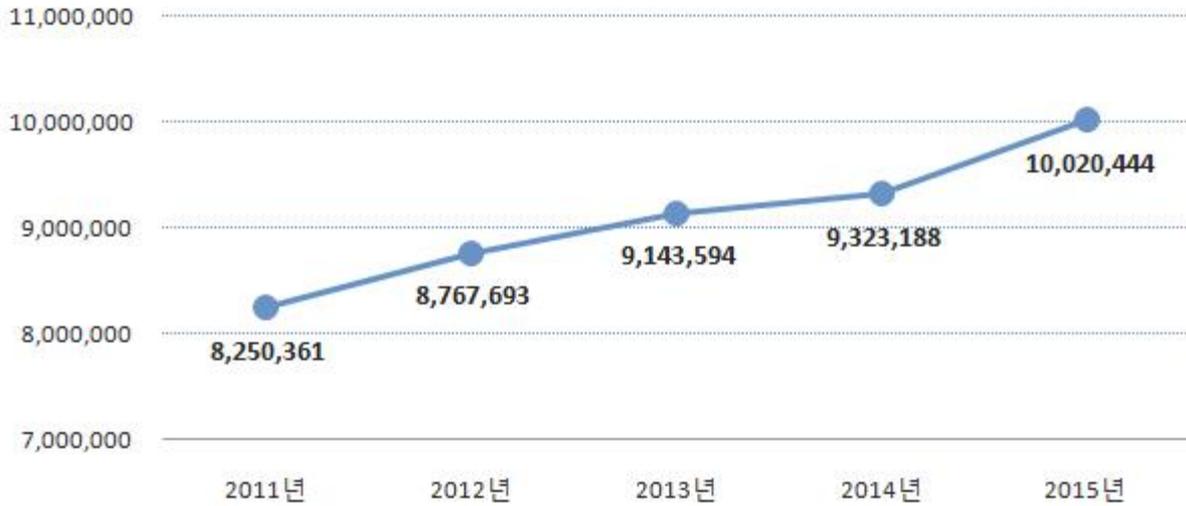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합 계	5,555,484	100	5,726,319	100	6,139,474	100	6,335,242	100	6,880,522	100
지방세	2,624,028	47.2	2,710,581	47.3	2,778,111	45.2	2,873,599	45.4	3,215,727	46.7
세외수입	406,877	7.3	455,681	8.0	553,954	9.0	299,427	4.7	172,423	2.5
지방교부세	938,104	16.9	1,020,178	17.8	1,051,196	17.1	931,220	14.7	920,000	13.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보조금	1,376,110	24.8	1,371,879	24.0	1,513,093	24.7	1,644,153	25.9	1,973,764	28.7
지방채	210,365	3.8	168,000	2.9	243,120	4.0	269,820	4.3	231,980	3.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317,023	5.0	366,628	5.3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해당 항목별 금액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항목은 '14년 신설

세입예산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중심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 부족한 재원은 의회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 세입 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 세입예산은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 수입의 전적일 뿐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산 시에는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우리 부산시의 2015년 일반회계 세입은 6조 8,80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방세**는 '12~'13년 중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취득세 임시감면 정책**에 기인하여 '13년의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바 있으나, 2013. 8. 28.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14년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 (전년대비 아파트 거래량 28.5%증가, 토지 43.7%증가)했고, '14년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5%→11%)과 '15년 지방세 제도의 변화[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담배값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원전, 화력) 등]에 힘입어 당분간은 지방세 수입이 증가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반하여, **세외수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 정산완료 및 대규모 공유 재산 매각 완료로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조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채수입**은 부산시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지방채발행상한제'를 추진하여 지방채 전체규모 '14년의 4,900억원에 비해 '15년에는 4,200억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020,444	6,880,522	753,157	1,557,194	829,571

-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250,361	8,767,693	9,143,594	9,323,188	10,020,444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 도		연 도		연 도		연 도		연 도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2014년	비중	2015년	비중
합 계	5,555,484	100	5,726,319	100	6,139,474	100	6,335,242	100	6,880,522	100
일반공공행정	761,618	13.7	794,249	13.9	856,996	14.0	932,886	14.7	943,345	13.7
공공질서·안전	107,301	1.9	114,022	2.0	101,213	1.7	106,489	1.7	136,968	2.0
교육	517,485	9.3	521,414	9.1	569,891	9.3	569,868	9.0	587,918	8.5
문화 및 관광	274,098	4.9	273,579	4.8	240,891	3.9	252,088	4.0	239,414	3.5
환경보호	150,567	2.7	115,050	2.0	119,983	1.9	80,079	1.3	84,640	1.2
사회복지	1,584,439	28.5	1,675,794	29.3	1,858,553	30.3	2,148,028	33.9	2,499,167	36.3
보건	80,156	1.5	78,138	1.4	79,964	1.3	92,237	1.5	107,279	1.6
농림해양수산	136,622	2.5	160,768	2.8	187,000	3.0	144,092	2.3	153,203	2.2
산업·중소기업	251,631	4.5	288,737	5.0	231,419	3.8	234,638	3.7	278,034	4.0
수송 및 교통	773,573	13.9	841,199	14.7	982,612	16.0	949,677	15.0	974,469	14.2
국토·지역개발	471,677	8.5	383,299	6.7	406,813	6.6	291,796	4.6	326,504	4.8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5,725	1.0	56,811	1.0	67,208	1.1	66,384	1.0	63,277	0.9
기 타	390,592	7.1	423,259	7.4	436,931	7.1	466,980	7.4	486,304	7.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 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우리 부산시의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조 8,8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14. 7.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어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 13.85%('14.12.기준)]에 속하는 부산으로서는 지원대상자 확대가 예견 되고, 출산율의 소폭증가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15. 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1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우

부산영상센터건립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종료로 인해 규모의 증감이 다소 있는 추세입니다. '14년 대비 투자사업 종료(시립박물관 수장고 건립) 및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차입금 상환예정액이 138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15년 전체 예산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민선 6기 도시비전 실현과, 문화복지도시 지향의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지원, 영상산업센터건립 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증액 사업들을 편성하여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건설 등 간선·지역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다대선)을 통한 교통의 인프라시설 구축과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9,978,565	10,223,602	10,320,779	10,608,848	10,882,241	52,014,035	2.2
자 체 수 입	3,979,051	4,050,375	4,150,929	4,284,513	4,393,196	20,858,064	2.5
의 존 수 입	3,776,758	4,019,860	4,041,123	4,172,128	4,304,684	20,314,553	3.3
지 방 채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100,00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2,755	1,733,368	1,708,727	1,732,206	1,764,360	8,741,416	△0.5
② 세 출	9,978,565	10,223,602	10,320,779	10,608,848	10,882,241	52,014,035	2.2
경 상 지 출	3,209,435	3,405,829	3,272,693	3,300,107	3,442,056	16,630,120	1.8
사 업 수 요	6,769,130	6,817,773	7,048,086	7,308,741	7,440,185	35,383,915	2.4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연도)<sup>1/(전체연도 수-1)</sup>-1] \* 100 (소수점 1자리)

### § 세입·세출 구분별 상세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국고,광특,기금)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수금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 3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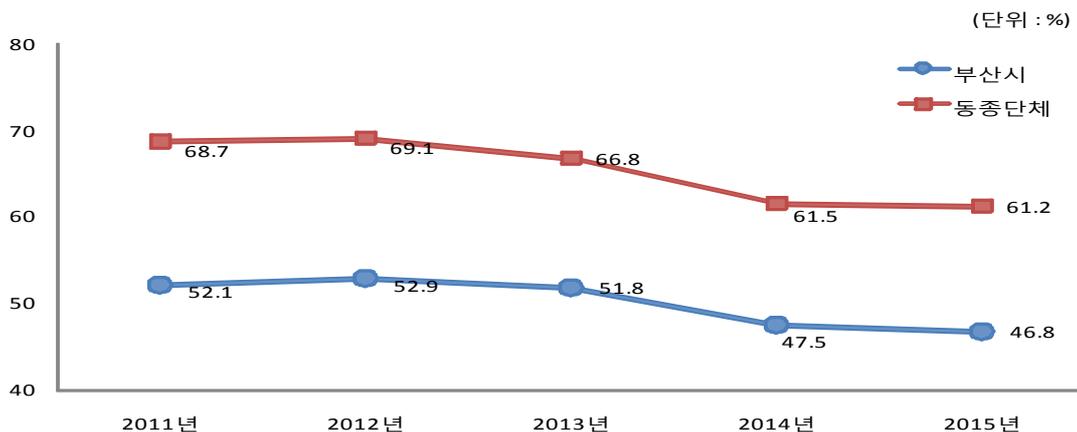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46.8%	6,569,646	3,077,274	2,893,764	231,980	366,628

- ▶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이고,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임
- ▶ 세입합계 및 자체세입은 지방교육세(310,876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2.1	52.9	51.8	47.5	46.8
최종예산	50.3	53.0	49.4	45.6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비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14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지만, 자체재원 대신 의존수입으로 각종 SOC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더 높다할 수 있습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주도는 6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0.8%	6,569,646	3,997,274	1,973,764	231,980	366,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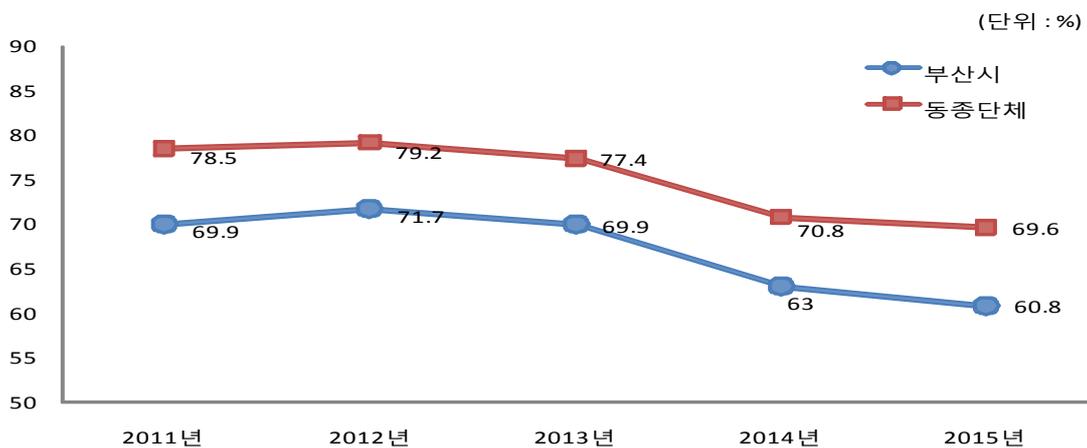
- ▶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자주재원은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합계
- ▶ 세입합계 및 자주재원은 지방교육세(310,876백만원)를 제외한 금액임

☞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14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9.9	71.7	69.9	63.0	60.8
최종예산	67.5	71.4	64.3	61.0	-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주재원(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더해져 동종 단체보다 재정자주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통합재정수지는 932억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1)통합재정 규모 (G=B+E)	2)통합재정 수지 1 H=A-(B+E)	3)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총 계	7,863,844	7,938,406	14,515	29,550	15,034	182,759	7,953,440	-89,596	93,163
일반회계	6,381,658	5,929,756	101	6,800	6,698	60,000	5,936,454	445,203	505,203
기타 특별회계	840,243	1,272,707	0	0	0	26,832	1,272,706	-432,463	-405,630
공기업 특별회계	571,969	596,815	0	0	0	95,927	596,815	-24,846	71,080
기금	69,974	139,129	14,414	22,750	8,336	0	147,464	-77,490	-77,490

▶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는 보전수입·지출(지방채, 이월금 등)의 재무활동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지표로 회계간 내부거래는 제외, 타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반영하여 통합한 수치임.
- 통합재정수지는 932억원 흑자임
  - 통합재정수지 1(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896억원 적자이나,
  - 통합재정수지 2(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32억원 흑자임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12,376	-145,056	-162,840	-106,163	-89,596
통합재정수지 2	27,179	11,012	-26,011	26,392	93,163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나, 순융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세출액증가율 대비 세입액증가율이 높아 '13년이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주로 민간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금지원 등 기금의 융자신청부진이 예상되어 융자예산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 물가상승률과 상응하여 경상적으로 증액되는 세출에 비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의 지방세 증가 요인과 국비 지원 증가 등으로 세입증가폭이 더 높은 상황임
-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는, 직영공기업의 공채발행수입액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순융자 규모축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1)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2)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3)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4 재정운용계획

###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6	151,781
여성정책추진사업	15	17,5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129,26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14	4,974

▶ 2015년은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5년 성인지 예산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취업활동지원,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서민금융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이 해당합니다.

####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

-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말합니다.
- 청년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2015년	대상사업유형
계			151,781	
1	여성가족담당관	여성취업활동 지원	1,114	여성정책추진사업
2	여성가족담당관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35	여성정책추진사업
3	여성가족담당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71	여성정책추진사업
4	여성가족담당관	아동양육지원사업(아이돌봄 지원사업)	8,958	여성정책추진사업
5	여성가족담당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여성가족담당관	여성주간행사 운영	68	여성정책추진사업
7	여성가족담당관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2,447	여성정책추진사업
8	출산보육담당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36	여성정책추진사업
9	출산보육담당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6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	아동청소년담당관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6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	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2,8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아동청소년담당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1,5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528	여성정책추진사업
15	여성회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여성부)	321	여성정책추진사업
16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운영	554	여성정책추진사업
17	여성문화회관	광역 새일지원본부사업	484	여성정책추진사업
18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정보화담당관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5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	정보화담당관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보조)	1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개발훈련	4,8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3,4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지원	851	자체
24	좋은기업유치과	여성기업지원	26	여성정책추진사업
25	기간산업담당관	신발산업 인력양성	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기간산업담당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신성장산업담당관	해상풍력 고풍력 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신성장산업담당관	풍력발전 고등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신성장산업담당관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신성장산업담당관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신성장산업담당관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	민생경제과	서민금융지원	5,1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민생경제과	청년창업 지원	2,101	자체
34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34	자체
35	농축산유통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	1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6	원자력안전과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50	자체
37	도시재생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00	자체
38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	화명수목원관리 사업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자치행정담당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	60	자체
41	인사담당관	국내훈련	2,0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6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3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2,02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8,9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5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지원	174	여성정책추진사업
46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확충(노인일자리사업)	45,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노인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7,24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	12,20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	노인복지과	고령친화사업 추진(이동노인복지관)	5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지원)	1,978	여성정책추진사업
51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건강증진	9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2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특화사업	99	자체
53	건강증진과	태아기형 사전예방	352	여성정책추진사업
54	보건위생과	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	체육진흥과	전문체육관련 지원	1,076	자체
56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직접)	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146	자체
58	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2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2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0	관광마이스과	MICE 전문인력 양성	3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자체)	2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북천)(자체)	36	자체
63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자체)	17	자체
64	시립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74	자체
65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6	순산유통가공과	어업인 육성지원	52	자체
67	수산자원연구소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8	해양자연사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9	기후대기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17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	생활하수과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개선	1,6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	소방행정과	전문 소방인력 양성	24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2	소방학교	기본전문과정 운영	3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3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운영	1,99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4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육성	2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5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1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6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기술보급	78	자체

##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880,522	55,224	3

▶ 20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36건 5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예산참여방/공지사항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125>)

###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위원회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b>총액</b>		<b>17,974</b>	
문화예술과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시설 장비 개선	200	신규
녹지공원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00	"
"	교통섬 내 수목 식재	100	"
"	낙동제방공원 정비사업	200	"
"	주례교차로 녹지공간 확대	20	"
"	보훈병원앞 고가도로 밑 화단 조성	100	"
푸른산림과	산에 꽃나무 심어 사계절 아름다운 산 만들기	400	"
환경보전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석면철거)	5,440	"
자원순환과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12	"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	70	"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및 개선 사업	900	"
도시경관과	학교 옹벽 벽화사업	150	"
창조도시기획과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5,000	"
도로계획과	숙등교차로~롯데캐슬카이저 가로등 교체공사	182	"
"	장전초교앞 산성터널과 금샘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3,000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보수대로 구덕사거리~동대사거리 일원 도로정비	290	"
"	흑교사거리~대영로터리 도로재포장, 중앙분리대 정비	900	"
농축산유통과	유기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40	"
"	도심 공공용지의 텃밭 활용(시민집합시설)	143	"
"	공공건물(대학) 옥상텃밭 시범사업	241	"
"	영유아 장애어린이집 텃밭 지원	146	"
"	장애인을 위한 치유형 텃밭 지원	20	"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실내텃밭 지원	120	"
재난안전과	감만동 8부두로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200	"

※ '15년 예산반영액 : 연계 및 포괄사업비 포함 금액임.

❖ 2015년 주민참여예산 계속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b>총액</b>		<b>37,250</b>	
경제정책과	노동산업 기술 지원 ▷ 일자리 창출 활성화	5,400	계속
문화예술과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500	"
생활하수과	감천문화마을 공동화장실 차집관거 설치	1,224	"
녹지공원과	친환경 공원 조성 ▷ 연지근린공원 조성	3,000	"
도시정비담당관	폐·공가 철거 사업 ▷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1,500	"
교통운영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300	"
재난안전과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상습 침수지 정비	2,000	"
도로계획과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조기준공	3,826	"
"	전포도로 확장공사	3,000	"
"	충무로 확장공사	10,000	"
"	강변대로 확장공사	6,000	"
하천관리과	감전천을 푸르게(하천복원)	500	"

※ '14년 주민제안 계속사업 예산반영액 : 시비만 반영